

## ◎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-9호

행정처분 공고

「의료기기법」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지하고자 하나,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5월 10일

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### 1. 대상

업종(허가번호)	업체명	대표자명	소재지
의료기기 수입(제4531호)	(주)해피글로벌코리아	손*희	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21
의료기기 제조(제2776호)	(주)이화교역	남*한	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1길 7
의료기기 제조(제1104호)	(주)세한기업	박*길	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5길 8
의료기기 제조(제6400호)	디에스글로벌	장*석	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54길 12-1

### 2. 처분사항

- 의료기기 제조업 및 수입업 허가취소(2021. 5. 30. 자)

### 3. 처분사유

-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

### 4. 근거법령

- 「의료기기법」 제36조제1항제23호 위반
-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 제58조제1항 관련 [별표 8] 행정처분 기준 II. 개별기준 제35호에 의한 처분

5.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(단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이어야 함)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(단,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이어야 함)에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[문의: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(Tel: 053-589-2707, Fax: 053-592-2709, E-mail: ruja21@korea.kr)]